

#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oor

윤 정 옥(Cheong-Ok Yoon)\*

곽 동 철(Dong-Chul Kwack)\*\*

심 경(Kyung Shim)\*\*\*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도서관법 시행령』상 정보취약계층의 현황 |
| 2. 선행연구 및 배경                  | 5.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특성        |
| 3.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 | 6. 맺음말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서의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중복된 취약성을 가지며, 각 하부집단의 고유성 및 소집단의 다양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oor related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help libraries and the related authorities understand better the information poor and develop strategies customized with the specific needs of various subgroups, by examining the definitions of major terms from laws, regulations and literatures.

This study confirms that most of the information poor have more than one disadvantage, and each subgroup has its own uniqueness and diverse subgroups. It also emphasizes that librar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ir uniqueness and multiple difficulties, and develop more user-centered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키워드: 도서관 서비스, 정보취약계층, 공공도서관, 도서관 발전 정책

library service, the information poor, public libraries, library development strategies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wackdc@cju.ac.kr)

\*\*\* (주)아이리스넷 대표이사(shim@irisnet.co.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89-206,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189>]

## 1. 머리말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십일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사회, 국가의 경쟁력은 산업, 문화 및 학술적 생산성의 기반이 되는 고급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동안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국가 내에서는 계층 간 정보격차가 발생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사회에서 재화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분리된 계층의 고착을 강화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쉽사리 개선되기 어려운 열악한 정보환경에 처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계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부문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격차의 해소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주요한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도서관은 이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갖도록 도울 책임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43조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어촌 주민 등을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특히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들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노력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예산 투입이나 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대응은 아직 부진한 편이며, 정보취약계층이 어떤 특성을 보이며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폭넓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곽동철 등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중장기 발전 정책 및 추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및 그들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 언급된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서의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를 검토하고,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웹자료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취약계층의 범주와 하부집단의 특성을 도식화하여,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및 배경

### 2.1 다른 나라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및 국제 도서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을 갖지 못한 집단을 대상으로 특별히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특히 1970년대 중반 차일더스가 미국 내 장애인, 노인,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이민자, 도시와 농촌 빈곤층, 산촌 오지 주민, 미국 원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리한 처지(disadvantage)”에 놓인 사람들을 “정보빈곤층(the information poor)”이라고 정의하며, 이들의 정보요구에 관한 197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들을 분석한 데서 크게 부각되었다. 그는 “불리함”이란 상대적인 것이며, 사람들의 직접적인 물리적 환경,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범,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 내적 기질 같은 것들로 구성된 특정한 맥락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차일더스가 정보빈곤층이라고 불렀던 정보취약계층은 첫째, 독해력, 시력, 청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과 같은 처리 능력 수준이 전형적으로 낮고, 둘째, “정보 고립지역(information ghetto)”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폐쇄된 정보 환경에서 살면서 종종 자신의 하부문화에 갇혀 있으며, 셋째, 일종의 “경향(predisposition)”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태도와 사고방식에 따라 정보 자체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Childers and Post 1975, 8, 32-35). 차일더스의 연구는 이후 도서관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요구, 정보격차 및 정보취약계층 관련 연구들의 기초자료이자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Case 2003), 사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일찍부터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미국은 미국도서관협회(ALA)를 중심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여러 하부집단을 위한 서비스 정책과 지침 등을 마련하였다. ALA 이사회는 2001년 1월 16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ASCLA 2001). 또한 1987년 처음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을 작성하였고, 1999년 개정을 거쳐 2008년에 이를 다시 선포하였다(RUSA 2008). 이 지침에서는 “고령자(older adults)”를 적어도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장서 구성 기준을 명시하였다. 그밖에 2007년 ‘다국어 장서와 서비스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인종, 문화, 혹은 언어배경에 무관하게 그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도서관 서비스와 자료 제공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RUSA 2007).

국제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UNESCO/IFLA의 ‘UNESCO/IFLA 공공도서관 선언’(1994)에서 천명되었다. 이 선언은 “공공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지역센터”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도서관 서

비스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혹은 사회적 신분 등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접근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특별한 서비스와 자료가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병원, 감옥 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이유로든 일반서비스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의 평등’이 주어져야 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로 인하여 당연한 ‘평등’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애를 고려한 특별한 방식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IFLA는 지난 2002년 8월 24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창립 70주년 기념 회의에서 채택한 ‘도서관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선언’(2002)에서 “온 인류가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환경을 누릴 근본적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고,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는 증대하는 정보격차(information gap)와 디지털 양극화(the digital divide)에서 나타나는 정보 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선언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는 사회의 복합성과 문화적 다양성 및 환경의 풍요함을 반영하는, 가장 폭넓은 자료를 차별 없이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을 공표하였다.

IFLA는 또한 ‘IFLA 디지털 도서관 선언’(2010)에서 “디지털 격차가 정보격차”이며,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유엔의 새천년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재확인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언급하거나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2.2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계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개별 하부집단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강숙희 2001/2011; 서옥연, 장덕현 2008; 심경, 윤정옥 2010; 오선경 2010; 윤정옥 2011; 이영숙 2007), 정보취약계층 전체를 하나의 단위 집단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남영준은 “공공도서관의 공적이며 공평한 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의 사각계층 ...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들”이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며, 도서관이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해외이주노동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등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남영준 2007). 광동철 등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에 제출한 미간행 보고서에서 현재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주민 등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 전략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향후 서비스의 개선방안, 국가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광동철 외 2011). 윤희윤은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5대 취약계

층, 즉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윤희운 2012).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라는 큰 틀의 목표는 공유하되 개별 하부집단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외 문헌 및 관련 정책 선언 등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서관은 이러한 노력의 중대한 축을 담당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

#### 3.1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09년 3월 25일 일부 개정된 우리나라의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sup>1)</sup>과 지난 2011년 1월 17일 공포된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5호)』<sup>2)</sup>에 따른다. 이 법령들에서는 ‘지식정보격차’ 및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은 직접 정의되지 않았고, 격차 혹은 취약성의 대상인 ‘지식정보’ 자체가 무엇인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현행 『도서관법』은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의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3조(도서관의 책무)에서 “①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은 제21조(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서 지식정보취약계층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어촌의 주민은 『도서관법 시행령』은 2009년 9월 21일 일부개정 시 처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취약계층”에 포함되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신체적·정신적 요인, 경제적·사회적 요인 및 연령적 요인과 더불어 농어촌과 같은 거주 지역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 3.2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의 법적 정의

현행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조항의 근거가 된 것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9705호)이다. 이 법 자체는 2009년 5월 22일 폐지되었으나,<sup>3)</sup>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10166호)이 이를 대체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법으로

1) 법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 2009.03.25(법률 9528호) 문화체육관광부.

2) 법제처. 『도서관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1.1.17 대통령령 제22625호]. 문화체육관광부.

3) 법제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 2009.05.22(법률 9705호) 행정안전부.

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sup>4)</sup>은 '제1장. 총칙'의 제3조(정의) 등에서 국가정보화의 맥락 안에서 '정보' 및 '정보격차' 등 주요 용어들을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1>에 보는 것처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정보'의 개념을 광 또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만 한정하였다. 9항에서 '정보격차'의 원인을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격차의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이라는 범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4항에서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라고 정의함에 따라, 일단은 지식과 정보를 분리된 개념으로 간주함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7항에서는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치 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

존 및 이용 가치'를 가져야 하고, 형태 혹은 매체 면에서는 '디지털화 되었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라는 특성을 가짐을 명시하였다. 『국가정보화기본법』상의 정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격차'와 『도서관법』상 '지식정보격차'의 개념이 같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처럼 『도서관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정보격차나 정보취약계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을 근거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 방향을 제안한 박동철 등(2011)은 그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에 윤희운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정책 방향을 논할 때 지식정보격차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신체적, 연령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에 접근, 수용,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에서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윤희운 2012, 54). 그 역시 지식정보가 무엇인지는 직접 정의하지 않았으나 영문제목에서 "knowledge and

<표 1>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정보 관련 용어 정의

조항	용어	정의
1항	정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항	정보화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항	지식정보사회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항	지식정보자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9항	정보격차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법제처. "국가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010.03.22(법률 10166호) 행정안전부.

information”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는 별개의 개념임을 암시하였다.

### 3.3 정보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들을 직접 정보취약계층 혹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라고 직접 정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으로 정의하여 간접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매년 각 지역 도서관들의 정책 현황을 보여주는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은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동 시행계획의 8개 세부계획 중 ‘Ⅲ.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사회통합에 기여’ 항목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 주민의 네 개 집단뿐만 아니라 국군장병, 재소자, 다문화가정 등 보다 다양한 집단까지도 포함하며, 이들을 위해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체조건, 경제능력, 나이, 거주지역 등의 기본 조건과 더불어 일반 정보시설에 접근성이 제한되는 사회 특수계층과 문화적 소외계층을 추가로 정보격차의 해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직접 이들을 정보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정보격차의 해소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들을 정보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한편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의 법적 근거가 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또한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으로 이들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시행 대상으로서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도 직접 정보취약계층을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대상자라는 점이 그 뜻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정보취약계층은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보다 넓게 정의되어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교육 시행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그리고 “1.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및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 또는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회구성원의 명칭, 속성 및 정의의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들은 신체, 정신, 경제, 지역, 접근, 문화, 언어, 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속성으로 인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과 노인은 『도서관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모두에서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국군장병과 재소자는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에서만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유일하게 정보격차 해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한부모복지시설의 보호를 받은 사람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만 명시되어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한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이들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여 각 구체적인 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네 개 집단의 정보취약계층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며, 각 집단들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은 언어, 문화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갖는 한편으로 농촌 거주, 수급권자 등과 같은 여타 정보취약계층과 공통적인 사회,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정보취약계층의 네 개 집단을

<표 2>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정의의 출처

	하부집단	속성	정의의 출처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	장애인	신체/정신	○	○	○	○
2	기초생활수급자	경제	○	○	○	
3	65세 이상 노인: 고령자	신체	○	○	○	○
4	농어촌 주민	지역	○	○		○
5	국군장병	접근		○		
6	재소자	접근		○		
7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문화/언어		○		○
8	북한 이탈 주민	문화			○	
9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사회/경제				○
1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	사회/경제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람	기타			○	○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등 별도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 4. 『도서관법 시행령』상 정보취약계층의 현황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네 개 하부집단의 정의 및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비 집단 규모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 4.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sup>5)</sup>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수는 2,519,000명에 이른다. 여기에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매년 16개 시군에서 수합된 데이터에 따라 그 수가 확인되고 있다. 2005년 현재의 데이터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4.59%에 해당한다.<sup>6)</sup>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sup>7)</sup>은 먼저 장애 범주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로 세분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지적장애’로 명칭 변경),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성장애’로 명칭 변경)로 세분하고 있다. 이렇게 15개 범주로 구분된 장애 유형은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된 장애인정범위를 반영한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정범위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로만 국한하였으나, 2000년 1차로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 등 5종을 추가하고, 2003년도에 2차로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을 추가하였다.<sup>8)</sup>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등록장애인 수가 2001년 1,134,000명에서 2011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난 2,519,000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등록장애인 수 증가에는 앞서 언급한 2000년과 2003년의 장애인정범위 확대도 영향을 미쳤고, 급속한 인구노령화 등 다양한 이유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장애인 가운데 장애수당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중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009년 당시 등록장애인 2,430,000명 가운데 장애연금

5) 법제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426호) ((타)일부개정 2011.1.4) 보건복지가족부.

6) 통계청. e-나라지표. “장애인현황.” [online]. [cited 2012.10.12]. <<http://www.index.go.kr/>>.

7) 보건복지부. 2003. “장애등급판정기준.” 서울: 동 부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2.

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의 이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연혁.” [cited 2011.6.3]. <<http://mw.go.kr>>.

과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486,642 명으로 전체의 20% 정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였다. 이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2011년에는 316,861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2010년부터는 경증장애인만 장애수당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장애수당 수급자들은 장애인인 동시에 경제적 빈곤이라는 중복된 어려움을 가진 집단이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시 이러한 중복된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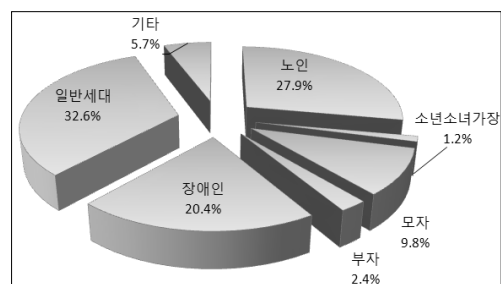
#### 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sup>9)</sup>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의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항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기본적으로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며 지급하며, 2011년말 현재 1,469,000명이 이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2.9%가 해당하였다.<sup>10)</sup>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이다. 2006년 ‘차상위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103만 명 정도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그림 1>은 2011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및 세대별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수급가구 수는 850,689 가구로서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기타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일반세대가 277,081가구(32.6%)로서 가장 큰 집단이지만, 이미 정보취약계층으로 간주되고 있는 노인세대가 237,213가구(27.9%), 장애인세대가 173,751가구(20.4%)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경제적 빈곤이라는 중복의 어려움을 갖는 집단이다.



<그림 1> 가구유형 별 수급가구 비율 (2011년)

9)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

10)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 수급현황.” [online]. [cited 2012.10.12]. <http://www.index.go.kr/>.

### 4.3 65세 이상의 노인

『도서관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정보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간주하는지 직접 정의하지 않고 있다.<sup>11)</sup> 그러나 동 법의 제26조(경로우대) ①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65세 이상이 경로우대 대상인 노인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인정된 노인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는 고령자를 정의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p>12)</sup>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

자의 정의)에서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하여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은 이 법에 따라 고령자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법』 및 동 법 시행령 또한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65세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노인의 정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나, 도서관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대체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IFLA(2009)는 우리나라의 노인에 해당하는 용어인 “Elderly”는 65세 이상으로 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60-74세인 사람들은 “young old”, 75-84세인 사람들은 “old”, 85세 이상인 사람들은 “oldest old”로 간주하는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정보취약계층으로서 노인을 고려할 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통상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11) 법제처. 『노인복지법』(법률 10509호) (일부개정 2011.03.30). 보건복지부.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10339호) (타법개정 2010.6.4)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2795호) (일부개정 2011.3.30) 고용노동부.

는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대에 이미 고령화사회(7.2%)가 되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13)</sup>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는 것은 노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을 단순히 정보취약계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 구성비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해집단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노인층은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적·경제적 안정성 등을 갖고, 은퇴 후 제이의 직업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적극성 등을 가진 집단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단지 연령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으로만 분류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소 제한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 4.4 농어촌의 주민

우리나라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농어촌의 주민은 다음과 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0386호)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이 법 조항의 근거가 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10449호)의 제3조 5호는 “농어촌”을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

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9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농가(農家)의 비중은 6.9%였고, 2010년 전체 총 인구에서 농가 인구 비중은 6.3%, 어가(漁家) 인구는 0.35%를 차지하였다. 2009년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34.2%, 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24.8%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결국 정보취약계층으로서 농어촌 주민은 상당수 노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 5.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특성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본 결과는 이들이 중복된 취약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부집단의 고유성과 소집단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정보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개별 하부집단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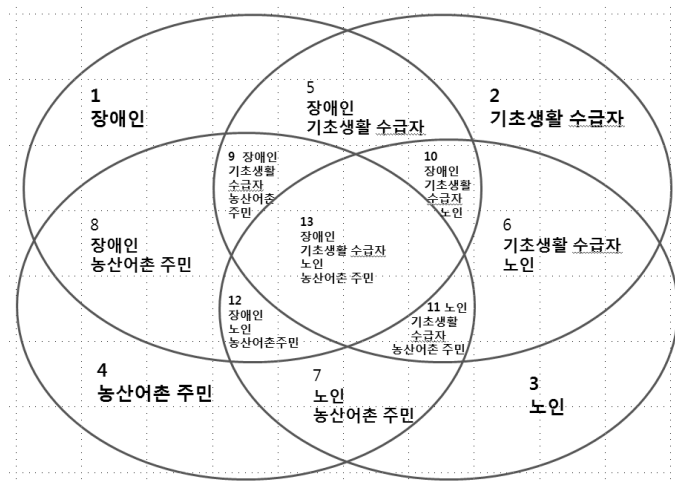
우선 정보취약계층이 중복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 절에서 언급한 각종 통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등록장애인 2,430,000명 가운데 20% 정도가 장애수당 수급자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와 더불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비 수급가구 가운데 노인세대가 27.7%이고 장애인세대가 19.4%이다. 농어

13) 통계청. e-나라지표.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출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10. [online]. [cited 2011.6.25]. <http://www.index.go.kr/>.

촌 주민의 노인 구성비가 높기도 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농어촌에서 다문화가정 구성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언어적,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다문화 인구집단이라는 특성이

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곽동철 등 2011).

이러한 중복성을 고려하여 구성한 <그림 2>와 <표 3>은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네 개 하부집단의 고유한 측면과 중복된 측면을 대략 보여주



<그림 2> 정보취약계층의 교차 집단

<표 3> 정보취약계층의 교차 집단

구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어촌 주민	교차 집단
1	○				장애인
2		○			기초생활수급자
3			○		노인
4				○	농어촌 주민
5	○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6		○		○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7			○	○	노인; 농어촌 주민
8	○			○	장애인; 농어촌 주민
*	○		○		장애인; 노인
*		○		○	농어촌 주민; 기초생활 수급자
9	○	○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농어촌 주민
10	○	○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11		○	○	○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농어촌 주민
12	○		○	○	장애인; 노인; 농어촌 주민
13	○	○	○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농어촌 주민

고 있다. <그림 2>에서 각 하부집단의 번호는 시계방향으로 임의로 부여한 것이며, 각 하부집단의 크기가 결코 같을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균등한 크기로 보여준다. 각 하부집단의 교차되는 특성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집단 1부터 4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정의된 기본적인 정보취약계층 네 개 집단으로서 집단 1은 장애인, 집단 2는 기초생활 수급자, 집단 3은 노인, 집단 4는 농어촌 주민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집단 5부터 13은 교차하는 특성을 가진 소집단을 의미하며, 편의상 교차집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교차집단 5부터 8은 두 가지 중복된 정보취약계층의 특성을 갖는 교차집단이다. 교차집단 5는 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교차집단 6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이다. 교차집단 7은 농어촌 주민인 노인들이며, 교차집단 8은 장애인 농어촌 주민들로 구성된다. <그림 2>에서 장애인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인 농어촌 주민의 교차 집단은 보이지 않으나, 그들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표 3>에 별표(\*)로 표시하였다.

한편 교차집단 9부터 12는 세 가지 중복된 정보취약계층의 특성을 갖는다. 교차집단 9는 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인 농어촌 주민이며, 교차집단 10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 노인이다. 교차집단 11은 농어촌 주민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고, 교차집단 12는 농어촌 주민인 장애인 노인이다. 마지막으로 교차집단 13은 정보취약계층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으로서 농어촌 주민인 사람들을 나타낸다.

이처럼 교차된 정보취약계층의 개별 하부집

단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각 하부집단 내 소집단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윤희윤은 정보취약계층 하부집단의 도서관 이용목적과 비용 이유, 도서관에서 기대하는 자료와 프로그램이 “계층별로 상이하고 천차만별”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윤희윤 2012, 69), 각 하부집단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갖는 소집단으로 이루어져, 이들을 단일한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장애인은 적어도 열다섯 개 장애 범주에 따라 상이한 특성과 요구의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요구가 각각 다를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특별히 이들을 위한 직접적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보호자나 정책결정자, 교육자,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장애인 관련 이해당사자라는 잠재적 이용자 집단의 간접적 요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윤정옥 2011).

한편 노인 가운데도 매우 성격이 다른 소집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당수가 고학력자, 전문직 경력자 및 도시생활자이다. 이들은 교육, 지식, 경제수준도 높으며, 그만큼 건강과 체력 면에서도 활동력이 높아 오히려 이른바 ‘우월(advantaged)’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시력과 체력 약화, 지적 능력 감소 같은 신체적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단지 65세라는 신체적 연령을 기준으로 이들을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일방적 수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농어촌 주민 가운데 40-50대에 귀농한 전문

직 출신자, 고소득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직접 다루진 않았으나, 종종 정보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도 구성원의 출신국,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하고, 농어촌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구성, 도시지역 취업으로 인한 다문화 이주민, 조선족, 고려인 등 한국혈통의 동포 등 다양한 집단이 혼재하므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 내의 또 다른 다양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을 다문화 이주자라는 언어, 인종, 문화적 '취약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가 반드시 '취약한' 문화를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이기 때문에 생겨난 취약성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각 하부집단 내 다양하면서도 고유한 소집단의 특성과 요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6.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의 관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이 누구인가 기술(記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보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농어촌 주민의 네 개 하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하부집단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며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갖는다. 하지만, 각 하부집단 간 상당수의 구성원이 <그림 2>에 보는 바와 같이 중복되는 취약성을 가진 교차집단을 구성하며, 개별 하부집단 안에서도 상이한 성격의 다양한 소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을 위해 『도서관법』에 명시된 정보취약

계층 정보격차 해소의 책임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 및 각 지역의 개별 도서관들은 매년 도서관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기획 및 운영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보취약계층의 다양한 하부집단에게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각의 특수한 정보요구와 정보환경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개별적으로 그러한 요구들에 평등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모든 도서관들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만을 갖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다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인 정보취약계층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우며, 그 가운데서도 하부집단의 크기와 가시성 등에 따라 종종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도서관들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지방 및 국가차원에서 협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시키며, 도서관 서비스의 접근성 및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중앙화된 서비스를 추진하고, 도서관 간 협력을 촉진하면서 정보취약계층 도서관정보 서비스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정보취약계층 정보포털의 구축 및 운영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서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격차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

등하게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연구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어떤 도서관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향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숙희. 2001.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229-256.
- [2] 강숙희. 2011.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97-123.
- [3] 박동철, 윤정옥, 심경, 김정호. 201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확대전략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4] 남영준. 2007.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49-68.
- [5] 서옥연, 장덕현. 2008. 발달장애아 가족의 정보빈곤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107-128.
- [6] 심경, 윤정옥. 2010. 『장애인 전자도서관 등 종합정보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7] 오선경. 2010. 시각장애인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41(1): 97-126.
- [8] 윤정옥. 2011. 장애인 정보포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7-47.
- [9] 윤희윤. 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3-75.
- [10] 이영숙. 2007. 장애인정보격차에 관한 소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69-91.
- [1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 "Issues: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online]. [cited 2011.6.10]. <<http://www.ala.org/ala/mgrps/divs/ascla/asclaissues/libraryservices.cfm>>.
- [1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RUSA). 2008.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online]. [cited 2011.6.10].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libraryservices.cfm>>.
- [1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RUSA). Reference



- Service Section.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 [online]. [cited 2011.6.13].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guidemultilingual.cfm>>.
- [14] Case, Donald O. 2003.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15] Childers, Thomas, & Post, Joyce. 1975. *The Information Poor in America*. Metuchen, NJ: Scarecrow.
- [16] IFLA. 2002. "Statement on Libra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ugust 2002.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braries IFLA text.doc>. [online]. [cited 2011.6.9]. <<http://unesco.org>>.
- [17] IFLA. 2009.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Section: Glossary of Terms and Definitions*. Compiled by Nancy Mary Panella. The Hague: IFLA Headquarters, 2009.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17.
- [18] IFLA. 2010. "IFLA 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making the world's cultural and scientific heritage accessible to all." Revised version endorsed by the IFLA Governing Board. [online] [cited 2011.5.30].  
 <<http://www.ifla.org/en/publications/ifla-manifesto-for-digital-libraries>>.
- [19] UNESCO.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November 1994. [online]. [cited 2011.6.9].  
 <[http://Public\\_library\\_manifesto\\_english.rtf](http://Public_library_manifesto_english.rt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ook-Hee. 2001. "Improving information service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through I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4): 229-256.
- [2] Kang, Sook-Hee.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y types of disabil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97-123.
- [3] Kwack, Dong-chul, Yoon, Cheong-Ok, Shim, Kyung, & Kim, Jeong-Ho. 2011. *A Research on the Strategic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Disadvantaged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4] Nam, Young-Joon. 2007.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library service for the alienated cla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49-68.
- [5] Seo, Ok-Yeon, and Chang, Durk-Hyun. 2008. "Information poverty viewed through the

-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 107-128.
- [6] Shim, Kyung, & Yoon, Cheong-Ok. 2010. *ISP for the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s and Library for the Disabled*. Seoul: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7] Oh, Seon-Kyung. 2010. “A study on the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 of visually handicapped.”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1(1): 97-126.
- [8] Yoon, Cheong-Ok. 2011. “A research on the information portal for the disabl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27-47.
- [9] Yoon, Hee-Yoon. 2012. “Strategie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cla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3-75.
- [10] Lee, Young-Sook. 2007. “A study on an information ga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69-91.